

직업병의 현황과 예방



양길승
성수의원장

1. 들어가는 말

'94년 1월부터 “건강소식”을 통해 직업병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계속하여 왔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보면 수은중독, 크롬중독, 진폐증,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중독, 망간중독, VDT증후군, 석면의 건강장해, 직업성 피부병, 직업성 천식, 전자파 장애 등이다. 아직 다루지 못한 것은 직업성 요통 등 근골격계에 대한 장해와 진동이나 고열 또는 저온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또 방사능에 의한 장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온 직업병은 대부분 다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꼭 질병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 잘 알아야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질병에 대한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직업병이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이 갖가지 직업병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아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직업병에 대한 소개의 마지막회를 우리나라 직업병의 현황을 총괄해 보고 일반적인 직업병 진단과 예방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삼는다.

2. 우리나라 직업병의 현황

우리나라의 직업병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현재 직업병

에 대한 통계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다. 하나는 노동부가 실시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의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나타나는 사람과 유해위험작업이 아닌 작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로 나온 사람을 모은 통계이다. 또 다른 통계는 같은 노동부에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치료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환자 수를 발표하는 것으로 두 통계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연도	검진에 의한 직업병자(명)	보상보험에 의한 직업병자(명)
1988	8,318	2,150
1989	7,537	1,561
1990	7,680	1,638
1991	7,152	1,537
1992	5,937	1,328
1993	4,327	1,413

이렇게 통계에 차이가 나는 것은 특수건

강검진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치료나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병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올해 규정이 바뀌었지만 작년까지 진단기준이 4000헤르쯔에서 50데시벨 이상이거나 500헤르쯔, 1000헤르쯔, 2000헤르쯔, 4000헤르쯔의 평균이 40데시벨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 산재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자 통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청력소실이 커 장애보상을 받을 때에만 계산이 된다. 그러나 보상기준은 보다 엄격한 6분법이라는 계산법에 의해 40데시벨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직업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소음성 난청 다음으로 많은 직업병 환자는 진폐증인데, 진폐증의 경우도 비슷하다. X-선 판독 결과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아도 진폐증 자체의 치료방법이 없고 단지 증상에 따라 치료하는 대증요법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경우는 폐결핵이 같이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거나 호흡이 힘들어졌다거나 할 때 뿐이다. 진폐증의 초기 상태인 진폐증 의증의 경우나 진폐1형의 경우 대부분 폐기능 장애가 심하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들도 산재보상보험의 통계에서는 빠지게 된다.

그러나 특수건강검진에 의한 통계도 실제의 작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상이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전해에 직업병 유소견자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비 유해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아니게 되어 특수건강검진을 못받게 되니 자연히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한번 걸리면 전혀 변할 수 없는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 환자들 중에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는 환자로 진단되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그밖에 다른 중독자들의 경우에도 아직 중독상태에 있어도 작업장이 바뀌면서 누락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더 중요한 것은 특수건강검진에 의해 보고되는 직업병 환자와 대학의 연구소 등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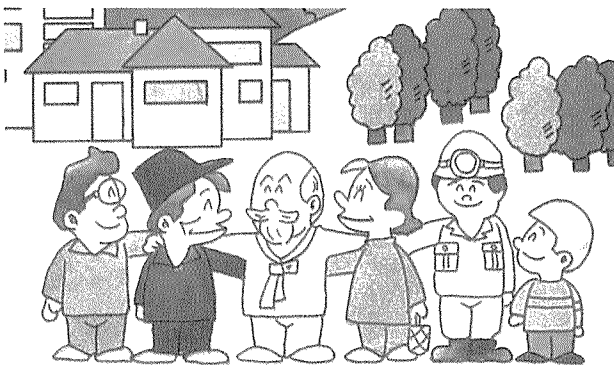
른 조사에서 보고되는 직업병 환자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검진이 부실하게 진행되어 직업병이 거의 없다는 곳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보고된 것은 수은중독, 크롬중독,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중독 등 그 예가 허다하다.

최근에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에서 무려 94%가 누락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검진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직업병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준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밖에도 현재 실시하는 검진에 의해 누락되는 질병은 피부질환, 치과 질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직업병 검진에 참여하여야 실상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3. 직업병의 예방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업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 등 노동자 건강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경제 성장, 국가경쟁력, 모든 사람의 안녕도 있을 수 없다.

병 예방 및 관리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건강에 장애를 주는 것을 파악하여 예방과 관리의 의무를 사업자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온도에 따른 작업규제는 고온의 경우 온도에 따라 허용 작업시간이 다르며, 소음의 경우도 소음의 크기에 따라 작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진폐증을 일으키는 먼지와 증금속, 유기용제 등 유해한 환경은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허용농도가 정해져 있고, 해마다 두 차례씩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록을 점검하면 유해한 상태 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업환경측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의 유해조건이나 취급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법에는 유해물질의 경우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경로와 증상, 대응방법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꼭 그렇게 되어있는가를 확인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안전수칙과 직업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만들고 그에 따르는 것도 중요한 예방수단이다. 작업장에 게시된 유해위험물 취급요령을 알아두고 실천하는 것은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작업장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안전기구나 환기설비 등 시설물들이 제대로 작동되어 효과를 내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안전관리공단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아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작업장의 유해위험 환경이나 조건을 관리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기적인 검진이다. 검진기관이 꼭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검진하는가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것은 성실히 검진을 받는 것과 함께 모두 중요한 일이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측과 함께 미리 검진계획을 보고받고 자신이 받아야 할 검진으로 적절한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현재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스스로 위생과 건강관리에 힘쓰고 노동조건과 환경이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더 이상 우리의 형제자매가 직업병이라는 불행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직업병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노동자 건강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모든 사람의 안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산재 없는 세상, 직업병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